장애학생 지원의 필요성

장애학생은 장애로 인하여 학습기능, 지적기능, 감각기능, 신체기능, 의사소통 기능, 대인관계 및 사회적 능력 등의 영역에서 한가지 이상 상당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장애가 없는 학생과 동등한 교육기회 및 학교생활에의 완전한 참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애학생에게 비장애학생과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이들이 학교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장애학생이 요구하는 인적 (예 : 도우미), 물적 (예 : 보조공학기기), 재정적 자원 (예 : 장학금 지원) 등의 '부가적 자원'(additional resources)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장애학생 지원의 궁극적 목적은 장애학생이 대학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완전한 참여가 가능하도록 물적, 인적 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는데 있습니다.

지원 대상

대학에서 지원 대상이 되는 학생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선정·등록된 학생으로서, 우리 대학에 입학한 장애학생 모두 해당이 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11개 영역)		장애인 복지법(15개영역)		
'특수교육대상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말함		'장애인'은 신체적·정서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함		
장애 유형	시각장애	신체적 장애	시각장애	1급~6급
	청각장애		청각장애	2급~6급
	지적장애		지체장애	1급~6급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1급~6급
	정서·행동장애		언어장애	3급~4급
	자폐성장애		신장장애	2급/5급
	의사소통장애		심장장애	1급~3급/5급
	학습장애		호흡기장애	1급~3급/5급
	건강장애		간장애	1급~3급/5급
	발달지체(9세 미안 아동에 해당)		안면장애	2급~5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장루·요루장애	2급~5급
			간질장애	1급~6급
		정신적 장애	지적장애	1급~3급
			자폐성장애	1급~3급
			정신장애	1급~3급
	※ 장애등급은 없고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기준에 의해 선정함	※ 손상정도에 따라 장애등급을 규정하고 있으며,장애등급이 낮을수록 장애정도가 심각함 (예 : 1급이 4급보다 장애정도가 더 심함)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라 함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함

대전보건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 소개



장애학생지원센터

장애학생의 종합적인 학습권 보장 뿐만 아니라 개인별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복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종합 학습권 보장 지원	장애학생 장기발전계획 수립 특별지원위원회 운영 등
교수 · 학습 지원	우선수강신청 지원 강의자 교수법·평가 지원 행정 요청 HIT복지(장애) 장학금 및 튜터링 지원 학습 기자재 대여 교내 도서배달 서비스 등
이동 · 편의 지원	이동 도우미 운영 학내 편의시설 모니터링 및 개보수 이동 편의 기자재 대여 및 관리 등
생활 · 복지 지원	생활 도우미 운영 장애학생 자조모임 지원 장애학생 및 도우미 간담회 개인 및 집단상담 등 장애학생 기숙사 우선 배정지원
진로 · 취업 지원	경력개발 프로그램 연계 취업프로그램 연계 문화체험 교류 등
장애인식 개선 및 기타	장애 인식 개선 및 장애체험 도우미 교육 협력체계망 구축 등

장애학생 휴게실

노트북, 프린터, 높낮이 조절 책상, 다용도 테이블과 의자, 소파 등이 구비되어 있는 편안하고 쾌적한 장애학생의 쉼터로 9동 4층 건강관리실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전보건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
34504 대전광역시 동구 충정로 21
TEL. (042) 670-9630(9동 4층)

HiT 푸른꿈 그대로 높이 높이 비상하자!

www.hit.ac.kr

강의자를 위한 장애학생 교수 · 학습 지원 안내



대전보건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
TEL. (042) 670-9630(9동 4층)

장애학생 지도 시 기본 주지사항

01 학교(교수 및 직원)는 장애학생 지원의 의무를 지닙니다.

02 장애학생의 효율적 수업 참여를 위한 수업계획서 (Syllabus)를 작성해야 합니다.

03 동등한 학습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04 성실한 상담 및 지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05 학생의 개인 신상에 대한 비밀을 보장해야 합니다.

06 장애학생의 개별 특성과 능력을 고려하여 맞춤형 학습지도를 실시해야 합니다.

07 학습결과에 대해 동일한 기대를 가지고 교수학습을 수행합니다.

08 장애학생의 의지를 존중하되 학생의 독립성에 중점을 두어 지도해야 합니다.

09 장애학생의 능력과 특성을 고려한 보완 또는 대체 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10 장애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을 위해 유관 행정지원부서와 협력적 관계를 유지합니다.

장애학생 지원 세부안내

※ 장애학생은 장애학생지원센터를 통해 교수 학습 지원에 관한 신청을 미리 해야 합니다.

구 분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기 타
01 강의계획서작성	강의에 필요한 자료를 점자, 확대 자료, 한글파일, 음성 등의 대안 매체 를 사전 제공	강의계획서에 관한 정보를 메일이나 문자 등을 이용하여 사전에 학생 에게 제공하거나 학생이 요청할 수 있음		
02 강의실 배정 및 접근	유도 블록, 조명시설 등 편의시설 및 기자재 등을 제대로 구비한강의실에 우선 배정, 점자표시판 부착 등	소음에 영향을 받지 않는강의실로 우선 배정	휠체어 이동에 지장이 없는 강의실 우선 배정	지적장애나 자폐성 장애의 경우, 좌석을 찾는 것을 어려워할 수 있으므로 좌석을 지정하거나 좌석 안내
03 좌석 및 책걸상 배치	학습지원을 위한 보조공학기나 보조도구를 사용하는 경우 충분한 크기의 책상을 제공	구화(口話) 사용 학생을 위해 앞좌석 배정, 보조인력을 동반하는 경우 도우미 좌석 배정	휠체어를 탄 채로 이용할 수 있는 책상 제공 및 충분한 크기의 책상 지원, 지정 좌석 운영 가능	장애학생이 대필자나 안내견을 동반한 경우 보조인력의 좌석과 안내견이 위치할 공간을 안내하고 배정안내
04 교재 및 교수 · 학습기재	교재와 자료를 텍스트 파일로 제공, 전자교재, 점자교재, 녹음교재 또는 확대 교재로 변환하여 제공, 녹음 허용 등	교재와 자료의 텍스트 파일 제공, 강의노트 파일로 제공, 문자 자막용 칠판, 빔 프로젝트, 보청기 시스템 등의 교수기자재를 설치할 수 있음	교재나 자료의 텍스트 파일 제공, 수업 전에 강의노트를 파일로 제공하여 메모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 노트북 사용 등	지적장애나 자폐성 장애학생의 경우 별도의 교육과정이 필요할 수 있으 므로 개별화된 지원이 필요함
05 강의할 때의 지원	• 강의노트 제공 : 시각장애학생이 사용할 수 있도록 파일형태로 제공, 강의노트에 그림이나 도표가 있는 경우 구체적인 설명 기재 • 설명식 강의를 할 때 : 강의내용 녹음 허용, 강의 자료와 강의노트와 파일을 제공, 수화통역사, 대필자, 속기사 등의 보조인력 배치 허용 • 토론식 강의를 할 때 : 토론의 주제나 토론의 주요내용을 사전에 텍스트 파일로 제공하고, 보조인력 배치 허용 • 실험 · 실습 강의를 할 때 : 장애학생 도우미 또는 실습보조자를 배정, 청각장애학생은 사전에 실험 · 실습 절차 및 유의사항 등을 서면으로 제공 • 사이버 강의 : 강의 콘텐츠에 포함된 교안 이외에 강의노트 자료는 한글이나 워드 형식의 원본 파일 형태로 제공, 청각장애 학생을 위해 청각적 정보를 대체하는 자막 제시 등			
06 수업 참여 및 과제 제출 지원	• 발표를 할 때 : PPT나 워드프로세서 작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보조할 도우미를 배치하여 해당 과제 수행 지원, 필요시 서면 과제 등으로 대체 가능 • 조별활동 및 과제 : 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미리 역할 부여, 장애학생 도우미 배치를 통해 원활한 과제 수행 유도 • 개인과제를 할 때 : 과제의 면제보다 장애로 인하여 수행할 수 없는 과제인 경우 면담을 통해 대안과제를 제시하도록 함. 장애학생을 위해서 과제의 내용, 수행전략, 제출기한, 제출방법 등을 상세히 제시하는 과제 지침서를 장애학생 특성에 적합하게 조정하여 제시 • 현장 참관 및 실습 : 장애학생을 위해 현장참관 및 실습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사전에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미리 제공, 필요시에는 장애학생 도우미 또는 보조자를 배정			
07 시험 및 평가 지원	• 시험을 볼 때 - 평가 장소나 시간 등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습득하고 있는지 문자나 음성메세지 등을 통해 사전에 확인 - 가능하면 별도의 공간에서 시험시간 연장(비장애학생보다 1.2배~1.7배). 보조공학 기자재 사용, 대독자 및 대필자 사용 등의 평가조정을 활용 - 청각장애 학생의 경우, 듣기평가와 같이 청각적 정보가 시험문제에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듣기를 대처해줄 수 있는 문제나 기타 대체적 방안 제공 - 자필시험에서 어려움이 있는 학생의 경우 구술평가로 대체, 서술형 시험을 학생이 표현 가능한 수준의 요약형으로 작성하도록 평가 조정 가능 • 성적 산출을 할 때 - 장애학생을 위해 평가 방법이나 절차를 달리 적용할 수 밖에 없는 교과나 과제의 경우 비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유를 설명하고 동의를 구함 - 장애학생의 공정한 성적 평정을 위해 개인 학생의 장애 특성에 따라 필답고사의 비중 및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비중을 조정하고, 다양한 과제와 구술고사 및 수행평가의 반영도를 조정			
08 강의 지원 자기 점검	• 강의자가 장애학생에게 적합하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 지를 스스로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함 • 중요한 것은 장애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며 현재 강의의 수업, 과제, 평가 등의 수행 과정에서 장애학생의 어려움을 해결해줄 수 있는 방안을 체계적으로 탐색해보는 것이 필요함			